

EU·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강유덕 국제경제실 유럽팀 부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차 례 ● ● ●

1. EU·싱가포르 FTA 추진의 배경
2. EU·싱가포르의 무역·투자 추이
3. EU·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4. 한국의 대(對)EU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주요내용 ● ● ●

- ▶ 2013년 9월 20일 EU·싱가포르 FTA가 가서명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싱가포르를 한국에 이어 EU와 FTA를 체결한 두 번째 국가가 됨.
 - 싱가포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적극적인 FTA 정책을 실시하여 왔으며, 경제규모는 ASEAN 총 GDP의 12.4%에 불과하나 EU의 대ASEAN 무역 중 35%를 차지하여 대ASEAN 투자에서는 90% 이상을 차지하면서 EU와 ASEAN을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왔음.
- ▶ EU·싱가포르 FTA는 한·EU FTA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어 협정문의 구조와 EU의 양허 수준이 유사한 것이 특징이나, EU 통상정책의 범위확대와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점 또한 존재함.
 - (상품) EU는 싱가포르에 대해 한·EU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부여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철폐를 실시하며, 싱가포르는 추가적인 관세철폐는 거의 없으나 양허를 통한 무관세정책으로 전환을 실시할 예정임.
 - (원산지규정) EU의 과거 FTA에 비해 간소화되었고, ASEAN 내 역내교역과 ASEAN 회원국과의 향후 FTA를 감안하여 누적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향후 발전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서비스) EU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얻어냈으며, 싱가포르에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의 양허를 제공하였음.
 - (기술장벽) 자동차 분야의 UNECE 기준(EU 사용기준)이 싱가포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시범품목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이 적용되고 추후 점차 확대되게 됨.
 - (기타)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개정 GPA를 준용하여 개방되었으며, 지재권 및 무역관련 환경 및 노동규제, 이행협약체 운영방식에서는 한·EU FTA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임.
- ▶ 싱가포르를 시작으로 EU와 ASEAN 회원국 간의 FTA가 가시화되면서 대(對)한국 투자전환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EU의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EU·싱가포르 FTA 발효 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전환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대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규제경쟁에서 EU의 입지가 한층 공고히 되면서 EU의 대한국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1. EU · 싱가포르 FTA 추진의 배경

■ EU와 싱가포르는 2013년 9월 20일 양자간의 FTA에 가서명(initialing)함으로써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였음.

- EU와 ASEAN 간의 FTA 협상은 한·EU FTA 협상(2007년 5월 시작)과 거의 동시에 시작되었으나, 초기의 지역 대 지역 협상에서 ASEAN 개별 회원국과의 협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연된 바 있으며, 이 중 싱가포르와의 FTA 협상 속도가 가장 빨라 2012년 12월에 타결, 2013년 9월에 가서명되었음.
- EU는 2006년 10월 FTA 추진전략인 글로벌유럽(Global Europe Initiative) 발표 시 한국, 인도, ASEAN을 FTA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이 전략에 근거하여 2007년 5월부터 ASEAN과 지역 대 지역 차원의 FTA 협상을 시작한 바 있음.
- 그러나 ASEAN 회원국간 통합의제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2009년 3월 협상을 중단, 이후 개별 ASEAN 회원국과의 협상으로 전환하여 2010년 3월 싱가포르와 FTA 협상을 시작하였음.
- EU는 한국, 싱가포르와의 FTA 발효·가서명 이외에도 캐나다와 최근 FTA를 타결(2013.10.18) 하였으며, 인도와도 잔여 기술적 이슈를 중심으로 협상을 마무리 중인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추진한 FTA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음.¹⁾
- 싱가포르는 2004년 미국과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EU와의 FTA에 가서명함으로써 아시아 국가 중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 및 EU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됨.
- 현재 투자부문(chapter)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협상완료 후 하나의 FTA 형태로 통합될 것임.
- EU·싱가포르 FTA는 EU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투자자-국가소송제(Investor-State Dispute, ISD)를 포함하는 FTA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EU가 체결하는 FTA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음.²⁾

■ EU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와 가장 먼저 FTA를 체결하게 된 데에는 싱가포르의 적극적인 FTA 정책 및 지역 내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역할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싱가포르는 ASEAN 차원에서 체결한 FTA와 별도로 일본(2002), 미국(2004), 중국(2009) 등 대형 국가들과 FTA를 발효시키는 등 적극적인 FTA 정책을 추구하여, 2000년 이후 WTO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양자 FTA를 체결하였음.
- 지금까지 싱가포르는 ASEAN 차원에서 6개의 FTA를 비롯하여 14개의 양자 FTA를 발효시켰으며,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을 비롯하여 4개의 양자 FTA를 협상 중인데, 이로써 무역 및 투자유치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였음.

1) 현재 EU의 FTA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부록의 [부표 1]을 참조할 것.

2) 리스본 조약 발효(2009년 12월) 이전 투자부문은 EU 공동체와 회원국 간의 공동권한에 속하는 영역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제3국과의 FTA 협상 시 시장접근(market access) 부문에만 협상권한을 위임받았으며, ISD와 같은 투자자 보호(investor protection)는 EU 개별회원국과 제3국이 체결한 양자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을 통해 다루었음. 리스본 조약은 EU 공동체의 배타적 권한 영역을 서비스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해외직접투자 부문으로 확대시켰으며, 이로 인해 EU 공동체 차원에서 FTA를 통해 투자자 보호조치를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로 인해 EU·싱가포르 FTA는 EU가 체결한 FTA 중 최초로 ISD를 포함하게 됨.

- 싱가포르가 미·싱가포르 FTA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이미 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해왔다는 점도 EU가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한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음.
- 싱가포르는 ASEAN의 무역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품수출 중 재수출의 비중이 45%에 달해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간주됨.

표 1. 싱가포르의 FTA 추진현황

발효 중(발효 일시)		협상완료 또는 서명		협상 진행 중	
ASEAN 차원	양자 FTA	ASEAN 차원	양자 FTA	ASEAN 차원	양자 FTA
▶ AFTA¹⁾(1993) ▶ 중국 (상품: 2005, 서비스: 2007, 투자: 2010) ▶ 한국 (상품: 2007, 서비스: 2009, 투자: 2009) ▶ 일본(2009) ▶ 호주·뉴질랜드(2010) ▶ 인도(2011)	▶ 호주(2011.9) ▶ 중국(2009.1) ▶ 코스타리카(2013.7) ▶ GCC²⁾(2013.9) ▶ 요르단(2005.8) ▶ 인도(2005.8) ▶ 일본(2002.11) ▶ 한국(2006.3) ▶ 뉴질랜드(2001.8) ▶ 파나마(2006.7) ▶ 페루(2009.8) ▶ EFTA(2003.1) ▶ 브루나이·뉴질랜드·칠레(Trans-Pacific SEP³⁾, 2006.5) ▶ 미국(2004.1)		▶ EU (가서명 2013.9)	▶ 일본 (서비스/투자 협정) ▶ 인도 (서비스/투자 협정)	▶ 캐나다 ▶ 멕시코 ▶ 파키스탄 ▶ 우크라이나 ▶ TPP⁴⁾ ▶ RCEP⁵⁾

주: 1) AFTA: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2) GCC: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로 구성

3) Trans-Pacific SEP: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일명 P4

4)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미국을 비롯 현재 12개국이 협상 중

5)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SEAN 회원국 + 한·중·일 등 현재 16개국이 협상 중
자료: <http://www.fta.gov.sg>로부터 저자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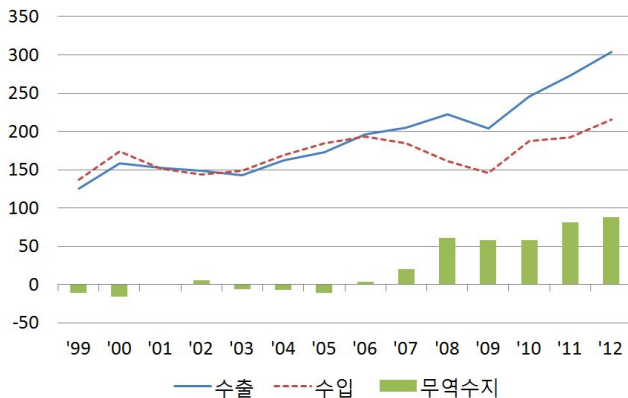
2. EU·싱가포르의 무역·투자 추이

- EU와 싱가포르 간의 무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EU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에서 모두 대싱가포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EU와 싱가포르 간의 상품무역은 2006년까지 균형을 이루어왔으나, 이후 EU의 대싱가포르 수출이 수입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EU의 무역흑자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음.
 - EU와 싱가포르 간 교역은 1999년 262억 유로에서 2012년 512억 유로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계기로 EU의 무역흑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왔음.
 - 유럽통계청(Eurostat) 자료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EU 수출이 2011~12년의 기간 중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의 경기침체로 감소하는 데 비해, 싱가포르의 대EU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음.
- 서비스 무역은 EU의 대싱가포르 무역흑자 구조가 고착화되어 EU는 연간 40억 유로 수준의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 특히 서비스 무역은 EU·싱가포르 간 총 무역의 37.3%(2011년)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국가들간의 무역에 비해 그 교역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임.

그림 1. EU의 대상가포르 수출입 추이(상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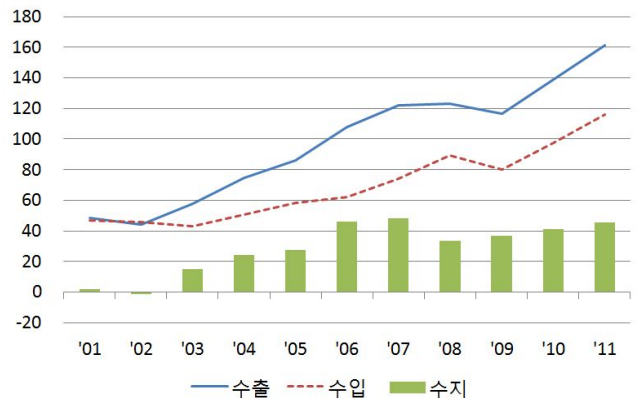
(단위: 1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그림 2. EU의 대상가포르 수출입 추이(서비스)

(단위: 1억 유로)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무역, 투자허브 역할을 담당하여 ASEAN 내에서의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높은 대EU 무역, 투자교류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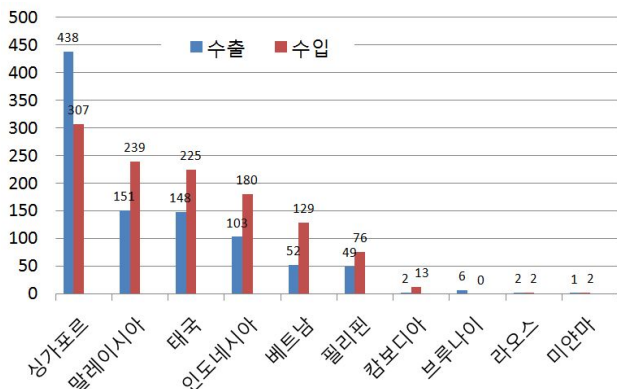
- 싱가포르의 경제규모는 ASEAN 총 GDP의 12.4%에 불과하나, EU의 대ASEAN 무역 중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수출: 46%, 수입: 26%)에 달하는데, 이는 재수출 비중이 높은 싱가포르의 특징에 기인함.

- 싱가포르의 총 수출에서 재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49%에 달하며, 품목별 수입물량과 적자기조인 대EU 무역수지를 감안할 때 EU로부터의 수입도 50% 이상 재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부록의 [부표 4] 참조).

※ 싱가포르의 GDP는 한국의 20% 수준이나, EU로부터의 수입량은 한국의 85% 수준을 기록

그림 3. EU의 대ASEAN 회원국 수출입(상품+서비스)

(단위: 1억 유로, 2012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표 2. 싱가포르의 수출입 동향 및 재수출 추이

(단위: 1억 유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수입	3,563	4,232	4,597	4,746
수출	3,911	4,788	5,147	5,103
국내 수출	2,000	2,486	2,813	2,851
석유류	587	750	1,040	1,068
비석유류	1,413	1,736	1,774	1,783
재수출	1,911	2,302	2,334	2,252
재수출 비중	48.9%	48.1%	45.3%	44.1%
총 무역	7,474	9,021	9,744	9,849
무역수지	348	556	550	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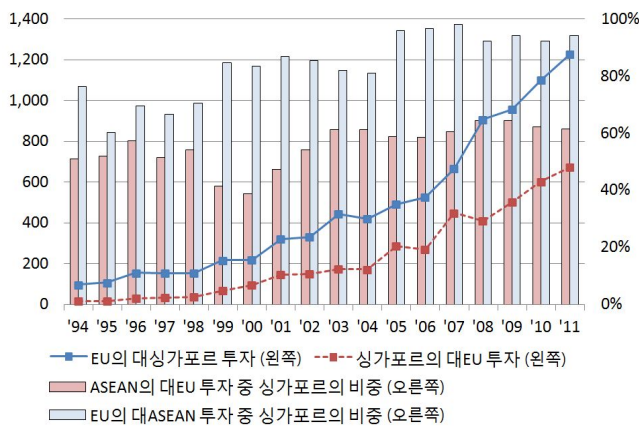
주: '국내 수출'은 재수출이 아닌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낸 부가 가치를 의미함.

자료: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Singapore.

- EU의 대ASEAN 투자에서 싱가포르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상회할 정도로 높으며, ASEAN의 대EU 투자에서도 싱가포르의 비중은 60%를 상회함.
- o EU의 대싱가포르 투자는 서비스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인데, 이는 많은 유럽계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데 기인하며, 싱가포르에 진출한 유럽기업은 9,000여 개로 추산됨.
- o 2002~11년 동안 EU로부터의 투자유입은 싱가포르 전체 외국인투자의 31.2%로, 미국(11.6%)과 일본(10.4%)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투자관계에 있어서 EU와 싱가포르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알 수 있음.
- ※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 기업들은 싱가포르 전체 FDI의 10.7%와 11.3%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 기업들과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시현

그림 4. EU와 ASEAN의 상호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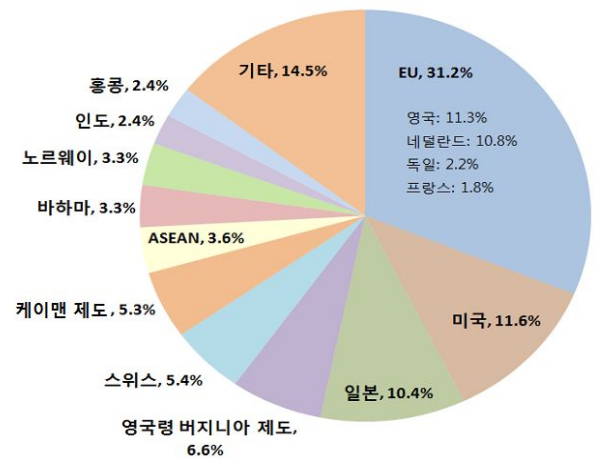
(단위: 1억 유로, %)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http://epp.eurostat.ec.europa.eu>

그림 5. 싱가포르의 전체 FDI 유입 중 국가별 비중

(2002~11년, %)



주: 2002~11년 싱가포르의 연평균 FDI 유치액은 4,300억 싱가포르 달러임.
자료: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http://www.singstat.gov.sg/statistics>

- 품목별 수출입은 EU·싱가포르 간의 직접교역뿐만 아니라 ASEAN의 대EU 수출입이 싱가포르를 통해 이루어지는 패턴을 띠고 있어 소비재뿐만 아니라 기계류 및 화학관련 제품과 같은 설비 및 중간재의 무역도 활발함.

- EU의 대싱가포르 수출은 기계류 및 수송장비, 화학관련 제품이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식품류의 수출도 5% 이상을 차지함.
- EU의 대싱가포르 수입은 화학제품 및 기계류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하며, 다른 ASEAN 국가와 달리 섬유 및 의류, 식품류의 수출비중은 매우 낮음.
- o 싱가포르의 대EU 수출은 유기화학물(HS code 29), 보일러 등 기계류(84), 제약(30), 전기제품(85) 등이 전체 대EU 수출의 75%를 차지하는데, 이는 협소한 국토와 높은 인건비로 인해 고부가가치 제조업에 특화된 데 기인함.

표 3. EU의 품목별 대상가포르 수출입

(단위: 백만 달러, 2012년)

수출				수입			
분류(HS section)	가치	비중	수출 중 비중 ¹⁾	분류(HS section)	가치	비중	수출 중 비중 ¹⁾
기계류(16)	11,208	36.9	2.5	화학제품(6)	9,835	45.7	6.7
수송장비(17)	3,642	12.0	1.4	기계류(16)	7,053	32.8	2.0
화학제품(6)	3,461	11.4	1.4	광물성 생산품(5)	1,550	7.2	0.3
광물성 생산품(5)	3,387	11.2	2.6	광학, 사진장비(18)	1,294	6	2.2
식품, 음료, 담배(4)	1,713	5.6	2.8	수송장비(17)	642	3	0.7
금속과 관련제품(15)	1,699	5.6	1.5	플라스틱, 고무관련(7)	255	1.2	0.5
광학, 사진장비(18)	1,485	4.9	1.9	금속과 관련제품(15)	234	1.1	0.2
플라스틱, 고무관련(7)	861	2.8	1.3	진주, 귀금속(14)	143	0.7	0.2
미분류 품목(22)	693	2.3	4.1	미분류 품목(22)	127	0.6	0.7
진주, 귀금속(14)	371	1.2	0.6	종이, 펄프류(10)	91	0.4	0.6
총 수출	30,340	100	1.8	총 수입	21,502	100	1.2

주: 1) 수출 중 비중은 품목별 EU의 총 수출,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Singapore.

3. EU · 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가. 협정문 구조

■ EU · 싱가포르 FTA는 한 · EU FTA를 기본 모델로 하고 있어 협정문의 구조와 EU의 개방수준이 유사한 것이 특징이나, EU 통상정책의 범위확대와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이점 또한 존재³⁾

– 협정문은 총 17장(chapter)과 원산지규정에 관한 1개의 의정서(protocol), 4개의 이해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그 구조가 한 · EU FTA와 유사한 측면이 많음.

- 제1~5장은 상품의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무역규제,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SPS), 관세 및 무역원활화로 구성되어 한 · EU FTA와 그 형식과 내용에서 매우 유사함.
- 서비스 및 투자(설립: 시장접근만 포함), 전자상거래는 한 · EU FT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장(제8장)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특히 서비스의 경우 열거주의 방식(positive approach)으로 개방되었음.
- 한 · EU FTA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장(제13장)을 통해 무역과 관련된 환경과 노동이슈를 다루고자 하였음.

※ 한국과 싱가포르는 EU 및 미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한 소수의 국가로, 양국이 각각 EU,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는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음.⁴⁾

3) EU 집행위원회의 통상총국(DG Trade)은 EU·싱가포르 FTA 전문(draft version)을 공개(2013.9.20)하고 있으나, 싱가포르 정부의 FTA 포털 사이트(<http://www.fta.gov.sg>)는 아직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본고에서는 EU 측이 공개한 협정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음.

4) FTA 협정문의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 있어서 한·미 FTA와 미·싱가포르 FTA는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를 모두 개별적인 장(chapter)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통신, 금융 서비스 등도 별도의 장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임. 또한 한·미 FTA와 미·싱가포르 FTA는 노동과 환경을 각각 별도의 장을 통해 규정하는데 반해, 한·EU FTA와 EU·싱가포르

- 반면에 한·EU FTA와의 차이점 또한 존재하는데, 이는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한 EU 통상정책의 범위확대, 최근 EU 통상정책의 새로운 방향, 싱가포르의 특수성 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 EU·싱가포르 FTA에서는 별도의 장(제7장)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기술장벽'을 다루고자 하였는데, 환경 및 에너지 분야 규제에 강점이 있는 EU 및 유럽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 ※ EU의 중장기 성장전략인 'Europe2020' (2010년 3월 발표)은 환경산업과 고기술산업 부문의 경쟁력 유지와 녹색산업 부문에서 국제적 기준을 선도함으로써 개방경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후 발표된 EU의 신통상정책(2010~15년)은 EU 역내에서 적용되는 규범을 교역상대국에 강요하는 이른바 '규범수출' 정책을 통해 EU 기업에 유리한 사업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⁵⁾
- 한·EU FTA는 '제8장 지불 및 자본이동'을 통해 자본이동을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EU·싱가포르 FTA에서는 '제17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에 통합하여 외형상 형식을 간소화하였음.
- 한·EU FTA는 ISD를 포함하지 않고 EU 개별회원국과의 BIT를 통해 투자자 보호조치를 다루고 있으나, EU·싱가포르 FTA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ISD를 비롯한 투자자 보호조항이 제9장에 들어가 FTA와 통합된 형태를 취할 예정임.
 - ※ 아직 ISD 관련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은 이유는 ① 리스본 조약의 발효로 인해 FTA 안에 ISD를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형성되었으나, 위 FTA가 ISD를 포함하는 첫 번째 사례라는 점, ② EU와 싱가포르 간의 기존 BIT가 1970년대에 제정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싱가포르의 낮은 수입관세율을 감안할 때 EU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ASEAN에 있어서 싱가포르의 특수성, 여타 ASEAN 회원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또한 고려되었음.

- 싱가포르의 공산품 수입은 사실상 무관세로, EU 측에서는 농산품 수출을 제외하고는 FTA 체결을 통해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폭이 매우 낮아 협상의 초점은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맞추어져 있음.
- 싱가포르의 농산품 수입관세는 10.9%로 높은 편이나, 공산품(non-agriculture) 수입관세는 0%로 WTO 회원국 중 홍콩과 함께 관세가 가장 낮음.
- 다만 공산품 중 양허관세 채택의 비중이 65.1%에 불과하여 정책적 필요 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높는데, FTA를 체결할 경우 자의적인 관세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FTA 추진을 위한 동기가 될 수 있음.
- 싱가포르의 대EU 수출 중 절반 이상이 WTO하의 정보기술협정(ITA), 의약품협정(WTO Pharmaceutical Agreement) 등에 의거하여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어 위 FTA는 여타의 FTA에 비해 제조업 분야의 관세 철폐 이슈가 적은 것이 특징임.
- 위 FTA는 향후 여타 ASEAN 회원국과 추진 중인 FTA의 기준 모델을 제공하도록 가정되었으며, 일부 품목에 있어서는 ASEAN 회원국 내에서 누적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FTA는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을 통해 규율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특징은 미국형(America), 유럽형(Eurasia) FTA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이 외에도 원산지규정이 양 FTA의 차이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분야임.

5) 이에 대한 자세한 배경 및 설명은 강유덕(2011), 「EU 신통상정책의 내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11-04호를 참고할 것.

표 4. 한·EU FTA와 EU·싱가포르 FTA의 협정문 비교

한·EU FTA	EU·싱가포르 FTA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1장 목적 및 일반정의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제3장 무역구제	제3장 무역구제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4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5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6장 관세 및 무역원활화
제7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7장 <u>재생에너지 발전분야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관세장벽</u>
제8장 <u>지급 및 자본이동</u>	제8장 서비스 무역·설립 및 전자상거래
제9장 정부조달	제9장 <u>투자자 보호(현재 협상 중)</u>
제10장 지적재산	제10장 정부조달
제11장 경쟁	제11장 지적재산
제12장 투명성	제12장 경쟁 및 관련 문제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제14장 분쟁해결	제14장 투명성
제15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제15장 분쟁해결
의정서: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세관 분야 상호 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 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제16장 중재절차 제17장 제도·일반 및 최종규정 의정서: 원산지규정

주: 1) 밑줄친 장(chapter)은 양 FTA간에 상이한 장을 의미함.

자료: 한·EU FTA, EU·싱가포르 FTA 협정문, 산업통상자원부, European Commission DG Trade.

나. 협정문의 주요내용

■ (상품)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EU는 싱가포르에 대해 한·EU FTA를 통해 한국산 제품에 부여한 것과 유사한 수준의 관세철폐를 실시하며, 싱가포르는 추가적인 관세철폐는 거의 없으나 양허를 통한 무관세정책으로 전환을 실시할 예정이다.

– FTA 발효 시 EU는 대상가포르 수입의 3/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각적으로 철폐하며,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됨.

- EU의 관세철폐는 완전철폐가 이루어지는 기간에 따라 ① FTA 발효 시 관세 전면철폐 품목, ② 3년 내 철폐, ③ 5년 내 철폐, ④ 양허유예 품목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관세철폐 기간 및 양허의 폭은 한·EU FTA와 유사함.⁶⁾

6) 한·EU FTA에서는 즉시관세 철폐품목을 "staging category 0"으로 명명하여 양허표에 포함시켰으나, EU·싱가포르 FTA는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됨을 제2장의 부속서 A 1항에 명시하였으며, 이후 예외 품목을 서술하는 식으로 양허표를 구성함으로써 협정문상의 양허표를 단순화시켰음.

- 양허에서 제외되는 품목은 대부분 채소 및 과일, 어류로 품목 수가 한·EU FTA 때보다 많으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함.⁷⁾

표 5. EU·싱가포르 FTA와 한·EU FTA의 공산품 관세철폐 일정 비교(수입액 비중)

양허 유형	EU·싱가포르 FTA		한·EU FTA	
	EU	싱가포르	EU	한국
즉시 철폐	75%	100%	76.6%	66.7%
3년	85%	100%	93.3% ¹⁾	88.9% ¹⁾
5년	99.99%	100%	100%	97.0%
6~7년				98.4%
10년				99.5%
10년 초과				100%

주: 1) 2~3년 철폐. 2) EU·싱가포르 FTA 자료는 2007~09년 기간의 수입량을, 한·EU FTA는 2004~06년 기간의 수입량을 기준으로 작성됨.

자료: EU·싱가포르 FTA: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Economic Impact of the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 35; 한·EU FTA: 한·EU FTA 상세설명자료, 2012, 외교통상부, p. 3.

- 싱가포르의 상품양허안은 아직 전문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싱가포르는 이미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MFN 무관세 또는 매우 낮은 관세를 채택하고 있어 FTA를 통한 추가적 관세철폐는 주류 등 일부품목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는 WTO 양허관세의 채택 비중을 낮게 유지하되, 자발적인 무관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관세주권과 무역개방을 동시에 확보하여 왔으나, FTA를 통해 관세가 양허(binding)된다는 점에서 향후 대·EU 수입에 대한 자의적인 관세인상의 여지는 현저히 낮아지게 됨.
- 싱가포르는 HS 코드 8단위 기준 6개의 주류(맥주 및 약용삼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한·싱가포르 FTA를 통해서도 철폐된 바 있어 EU·싱가포르 FTA를 통해서도 철폐됨.⁸⁾
- 원유의 경우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EU의 대상싱가포르 브렌트유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으며, 싱가포르의 정제 석유(제트류, 디젤류)도 특정조건 충족 시 EU가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대·EU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음.⁹⁾

■ (원산지규정) 원산지규정은 EU의 과거 FTA에 비해 간소화되었고, ASEAN 내 역내교역과 ASEAN 회원국과의 향후 FTA를 감안하여 누적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향후 발전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EU·싱가포르 FTA 원산지규정 의정서는 한·EU FTA의 경우와 그 구성이 유사하며 원산지 인정기준은 품목에 따라 ① 완전생산, ② 특정 공정 또는 재료의 포함, ③ 세번(tariff heading) 변경 ④ 역내산

7) EU 측은 14개 품목(CN 코드 8단위 기준)에 대해 양허를 유예하였으며, 이외에도 28개 품목의 종량세(specific custom duties)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이 품목 중 대부분은 한·EU FTA에서는 대부분 발효 즉시 내지 1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임.

8) 관세가 철폐되는 6개의 품목은 다음과 같음. 22030010, 22030090(맥주류, 리터당 16S\$의 종량세 철폐), 22089010~40(약용의 삼수, 리터당 8S\$의 종량세 철폐)

9)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Unlikely to Affect Crude Oil Shipments", Reuters, February 13, 2013.

재료 최소 포함(중량 또는 가격) 여부 등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음.

- 특히 상당수의 공산품에 있어서는 세 번 변경, 역내산 재료의 최소 포함 여부 등을 선택하여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음.
- 특히 ASEAN 역내무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ASEAN 회원국산 중간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특정조건 충족 시 역내산(싱가포르 또는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원산지기준을 완화하였으며, 향후 EU와 여타 ASEAN 회원국 간의 FTA를 고려하여 범ASEAN 누적원산지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음.
- 원산지규정 의정서는 전반부 상당부분에 걸쳐 누적원산지(Cumulation of Origin)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Annex D에 명시된 HS 4단위 32개 품목의 경우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역내산(싱가포르 또는 EU산)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① EU와 FTA 협정을 발효 중인 ASEAN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재료일 경우(향후 여타 ASEAN 회원국과의 FTA 체결을 고려), ② 불완전한 공정(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이 아닐 경우
- 한편 한·EU FTA에서는 관세환급제도(duty drawback)의 유지를 인정하고,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을 규정한 데 반해, EU·싱가포르 FTA에서는 관세환급제도를 금지시켰으며, 직접운송조항을 보다 완화된 추가가공금지(Non alteration)로 대체하였음.
- 의정서 15조는 EU와 싱가포르 양측에서 위 FTA에 의거 특혜관세혜택을 누리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관세환급제도를 일체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 싱가포르의 수입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깝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싱가포르 측에 관세환급제도가 유지될 동기는 거의 없으며, 상기의 조항은 향후 MFN 관세율이 높은 ASEAN 회원국과의 FTA 협상을 위한 기준점을 확정하기 위한 EU의 조치로 이해될 수 있음.
- 한·EU FTA는 제3국 경유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기준을 엄격하게 규정¹⁰⁾하고 있으나, EU·싱가포르 FTA는 경유국에서 추가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게 됨.

■ (서비스) EU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협상의 주안점을 두어 다양한 분야에서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얻어냈으며, 열거주의 방식으로 싱가포르에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의 양허를 제공하였음.

- EU는 협상 초기부터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 개방에 공세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싱가포르는 통신, 환경, 금융, 엔지니어링, 건축, 우편, 해양수송, 컴퓨터 서비스의 분야에서 기존의 GATS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을 EU 측에 제공함.
- 싱가포르의 낮은 관세수준을 감안할 때 관세철폐를 통한 무역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EU는 싱가포르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특히 금융서비스 분야가 대표적임.¹¹⁾

10) 현행 한-EU FTA하에서는 제3국의 보세구역 경유물품이 특혜관세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단일탁송화물(single consignment)이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에 의하면 제3국의 물류센터 내에서 최종 수입국을 변경하기 위해 분할선적 및 마크·라벨 부착 등의 작업을 할 경우 FTA 하의 관세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음. 가령 프랑스 기업이 싱가포르에 물류창고를 운영하면서 최종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은 수출품목을 일단 저장하고, 이후에 한국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하여 이 물품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에는 단일탁송화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반면에 EU·싱가포르 FTA하에서는 제3국 물류센터에서 추가 변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작업이 이루어지더라도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일 탁송화물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특혜관세혜택의 대상이 됨을 의미함.

11) 2009년 EU 측이 실시한 EU-ASEAN FTA의 타당성 조사에서는 FTA를 체결할 경우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의 소득효과가

- 싱가포르의 금융 서비스 개방을 추진하여 왔으나, 소매금융 분야는 여전히 허가제(license)를 통해 통제를 받고 있는데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EU 금융기관에 대한 호혜적 대우를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음.
 - 또한 자격취득 조건이 시장진입을 막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ASEAN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 기준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EU는 통신 및 금융, 컴퓨터, 운송, 환경, 사업 서비스 등에 있어서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의 개방을 싱가포르에 부여하였고, 우편 서비스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함.
 - 단 한·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청각(문화), 국내연안수송, 항공수송, 광업, 핵재료 제조 및 공정관련 서비스의 경우 양허에서 제외하였음.
- (기술장벽) 자동차 분야의 UNECE 규정(EU 사용기준)이 싱가포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기·전자제품 분야에서는 시범품목에 대해 공급자적합성선언(SDoC)이 적용되고 추후 점차 확대되게 됨.
- 한·EU FTA에서 한국은 EU의 UNECE¹²⁾ 기준에 입각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부분적으로 수용(추후 확대수용)하였으나, EU·싱가포르 FTA에서는 EU의 기준과 시험을 충족한 자동차 및 부품의 경우 별도의 추가적인 인증 또는 수정없이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되게 됨.
 - 싱가포르 정부는 기존에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에만 적용되던 세제혜택(green rebate)을 대기오염 측면에서 유사한 효과를 내는 환경친화형 기술린 차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유럽 자동차업체는 이 조치로 인해 자동차 한 대당 12,000유로의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¹³⁾
 - 전기·전자부문에서 한·EU FTA 때와 마찬가지로 EU의 공급자적합성선언(Supplier's Declaration of Conformity, SDoC)¹⁴⁾ 제도가 수용되었으며, 싱가포르 정부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 우선적으로 TV, 온수기, 에어컨 등 38개 품목을 SDoC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나, 싱가포르 정부는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점검하여 SDoC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음.
 -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장비와 관련된 기술장벽에 관한 별도의 장(제7장)을 두어 이 부문에서 상호간에 SDoC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음.

가장 클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효과와 동인을 ① 관세철폐, ② 서비스 시장 개방, ③ 비관세장벽 철폐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78%의 소득효과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이는 EU-싱가포르 FTA를 통해 EU가 대상국인 싱가포르 서비스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함. Ecorys, 2009, Trade 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of the FTA between the EU and ASEAN, p. 25.

12) UN 유럽경제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 규정은 일명 '58협정(1958 Agreement)'으로 일컬어지는데, 자동차 및 부품관련 안전, 환경, 에너지 및 도난방지를 위해 단일 표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협정에 의거하여 개발된 규정은 유럽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규정으로 통용됨. 58협정은 1995년에 개정되어 비유럽권 국가들도 참여가 가능해졌으며, 현재 48개국이 참여하고 있음. 58협정의 정식명칭은 다음과 같음. 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technical prescriptions for wheeled vehicles,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 and the conditions for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s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s.

13) EU-싱가포르 FTA: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Economic Impact of the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 37. 싱가포르 정부는 환경보호 및 차량 수 제한을 위해 차량 등록세 외에 추가등록세(additional Registration Fee)를 부과하고 있으며, 차의 시장가치에 따라 구간별로 과세하고 있음. 온실가스(CO2) 배출량이 적은 차의 경우 추가등록세 중 5,000~20,000 S\$를 감면하고 있음.

14) 제품의 적합성 여부를 공급자가 시험평가한 후 판매하는 방식.

■ (정부조달시장) 양측은 WTO 정부조달협정(GPA)의 회의국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은 개정 GPA¹⁵⁾를 준용하여 개방되었음.

- 한·EU FTA에서 EU와 한국은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있어 GPA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되 세부적인 양허 목록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EU·싱가포르 FTA는 협정문 내에 양측의 세부 양허 목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양측이 WTO에 제출한 GPA 실행계획¹⁶⁾과 거의 동일함.
 - EU·싱가포르 FTA는 기존의 FTA에 비해 정부조달시장을 폭넓게 개방하고 있으나, 이는 개정 GPA를 FTA에 반영한 것으로 FTA에 따른 추가적인 개방 자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위한 적용 하한선(threshold)을 GPA 양허에 비해 낮추었음.
 - ※ 중앙정부 기구의 상품 및 서비스 조달개방의 하한선은 13만 SDR(개정 GPA 기준)에서 5만 SDR(EU·싱가포르 FTA)로 낮아짐.
- EU 측 발표자료에 따르면 위 FTA에 의거하여 EU는 100~120억 유로 규모의 조달시장을 싱가포르에 신규 개방하게 되나, 이는 개정 GPA에 따른 EU의 추가 양허에 의한 것으로 FTA로 인한 개방으로 보기는 어려움.
 - 위 FTA를 통해 싱가포르 기업의 EU 철도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며, 싱가포르 또한 일부 에너지, 환경분야 공공기관, 유틸리티 서비스의 조달을 개방하게 되나, 이는 양측의 GPA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GPA가 개정될 경우 서비스·투자·정부조달 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FTA에 반영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GPA를 준용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는 FTA의 전형적인 예임.

■ (지재권) 위 FTA는 저작권 및 음반업자 권리, 지리적표시제 보호 등에 있어서 한·EU FTA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자 사후 70년으로 규정되었으며, 음반업자 단일의 공평한 보상에 대한 권리 등 기존 싱가포르의 저작권 관련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EU는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위 FTA를 여타 ASEAN 회원국과의 FTA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목적이었던바, 수준 높은 지재권 보호를 요구하였으며, 이로 인해 향후 싱가포르는 ‘음반업자 단일의 공평한 보상’ 등과 관련한 일부 국내규정을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하기로 함.
- 지리적 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GI)에 대한 보호가 명문화되어 EU의 196개 품목에 대한 상표보호가 이루어졌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향후 GI의 확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협정문 말미의 이면합의서에서는 싱가포르 정부도 GI 리스트를 완성하여 위 FTA의 공식서명 이전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기타) 무역관련 환경 및 노동 이슈 규제, 이행협업체 구성 등에서도 한·EU FTA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임.

-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무역관련 환경과 노동 이슈를 통합적으로 다루고자 한 점, 양측 간의 정기적인 시민사회대화(Civil Society Dialogue)를 개최하도록 규정한 점도 한·EU FTA와 공통점임.

15) 개정 GPA는 2012년 3월 30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공식 채택.

16) WTO GPA/113, Action taken by the Parties to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at a Formal Meeting of the Committee at the level of Geneva Heads of Delegation on 30 March 2012, pp. 79-254(EU 측 양허), pp. 361-369(싱가포르 측 양허).

- 유럽의회의 요구에 따라 EU-싱가포르 FTA는 EU FTA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관련조항이 포함됨.
- 한-EU FTA에서는 무역위원회 산하 6개의 전문위원회¹⁷⁾를 FTA 이행협의체로 둔 바 있는데, EU-싱가포르 FTA에서는 이행협의체가 무역위원회 산하 ① 상품, ② SPS, ③ 통관, ④ 서비스·설립·전자상거래 등 4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됨.

4. 한국의 대(對)EU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이후 EU와 여타 ASEAN 회원국 간의 FTA 협상은 추진동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 상황을 고려할 때 EU·싱가포르 FTA를 기준 모델로 하되, 이보다 개방의 폭이 낮은 FTA 체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EU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인도네시아와는 사전조사(scope exercise)가 진행 중인데, 이 중 베트남과의 협상 속도가 제일 빠름.
 - EU와 베트남은 2012년 6월 FTA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 5차 협상까지 진행된 상태임.
 - 말레이시아와의 협상은 2010년 10월 협상 시작 이후 7차 협상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말레이시아가 TPP 참여를 선언하면서 협상이 지연¹⁸⁾되고 있으며, 태국과의 협상도 의약품 관련 지재권 및 ISD 협상에 대한 태국 국내의 반대¹⁹⁾로 난항이 예상된다.
- 향후 EU는 여타 ASEAN 회원국과의 FTA 협상에서 EU·싱가포르 FTA를 기본 모델로 활용하되 협상국의 요구와 상황에 따라 다소 낮은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
 - EU·싱가포르 FTA의 경우 무역품목과 거래량을 감안한 상호간의 실질관세율이 낮아 상품분야 협상은 비교적 수월하였으나, 여타 ASEAN 회원국과의 교역에서는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관세환급제도, 지재권 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 및 투자 등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EU는 콜롬비아/페루와 체결한 FTA는 한국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에 비해서 양허 수준 및 포괄 범위가 낮은바, 여타 ASEAN 회원국과의 FTA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있음.²⁰⁾
- EU-싱가포르 FTA 발효 시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투자전환효과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바, 이에 대한 대비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17) 6개의 전문위원회(① 상품, ② SPS, ③ 통관, ④ 서비스·설립·전자상거래, ⑤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⑥ 한반도역외가공지대) 외에 문화협력의정서에 의거 문화협력위원회가 추가되며, 이하 7개 작업반으로 구성됨.

18) FTA talks with EU postponed to give way to TPPA negotiations, *New Strait Times*. 말레이시아 산업자원부 차관 발언. October.31.2013.

19) The Green: European Free Alliance in the European Parliament, EU-Thailand Free-Trade Agreement: Thousands protest on the streets of Thailand. September.24.2013.

20) EU는 원칙적으로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Initiative, 2006년)에 의거 적극적·포괄적 FTA를 추진해왔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TA 대상국을 확대하기 위해 상대국의 상황에 따른 차별화된 FTA를 추진하기로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소 수정한 바 있음.

- EU-싱가포르 FTA가 발효될 경우 한국의 대상국 수출에 대한 무역전환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EU 수출의 경우 일부 품목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나타날 소지가 있음.
 - 한국의 4대 대EU 수출품목(통신장비 및 선박, 자동차, 반도체)은 애초 관세가 낮거나 싱가포르의 생산 자체가 없어 대EU 수출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은 낮으나, EU 측의 관세율이 비교적 높거나 싱가포르의 생산이 많은 섬유, 화학, 기계류 등에서 무역전환효과가 다소 발생할 소지가 있음(표 6 참조).
 - 싱가포르산 정제석유의 경우 이미 실질적으로 무관세로 EU에 수출되고 있어 계량분석의 결과*와 달리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음.²¹⁾
 - ※ 계량분석 결과(표 6)에 따르면 EU-싱가포르 FTA 발효 시 싱가포르의 대EU 석탄석유가스 및 관련제품(주로 석유관련 제품) 수출이 크게 증가(32.2%)할 것으로 나타나는데, 3.5~4.7%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기 때문임. 그러나 제트유와 디젤유는 각각 항공연료로 사용되거나 황의 함유량이 적을 경우(2,000ppm 미만) 이미 관세 면제혜택을 받고 있음.
- 반면에 물류 및 금융중심지로서 싱가포르의 위치를 고려할 때 투자전환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향후 EU와 여타 ASEAN 국가 간의 FTA가 체결될 경우 그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
 - EU-싱가포르 FTA가 ASEAN 회원국과의 누적원산지 인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은 향후 ASEAN 경제권의 역내 분업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와 여타 ASEAN 회원국은 투자유치에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미 ASEAN-중국 FTA가 발효(2010년 1월)된 점, ASEAN 역내시장의 통합심화정책이 추진 중²²⁾인 점도 ASEAN 회원국의 투자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함.
- 따라서 투자전환효과에 대비하여 기 체결 FTA 활용을 강화하고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내수시장을 앞세운 대EU 투자유치전략을 시행, 투자전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6. EU-싱가포르 FTA 체결에 따른 양측의 품목별 수출 증가

	EU의 대상국 수출		싱가포르의 대EU 수출	
	% 변화	백만 유로	% 변화	백만 유로
농수산물 및 광물	0.80	0.5	7.57	2.3
담배·음료	5.56	28.5	16.80	2.2
석탄·석유가스 및 관련 제품	0.90	1.1	32.20	160.3
저기술 제조업 ¹⁾	0.86	16.6	27.81	45.4
섬유	1.09	0.7	101.78	40.1
전기·가스	0.93	0.9	-0.42	0.0
화학	1.89	55.8	16.71	2142.1
중기술 제조업 ²⁾	0.64	7.0	15.59	18.4
중·고급기술 제조업 ³⁾	1.71	76.9	7.86	17.9
전자	0.39	6.7	3.13	134.4
기계	1.05	54.0	11.51	201.5
정부 서비스	1.24	6.2	-1.83	-3.0
기타 상업 서비스	7.72	1111.4	7.96	799.1
운송	0.38	22.4	-0.36	-14.5

주: 1) 저기술(low tech) 제조업: 고기류, 식물성 기름, 유류, 가공 쌀, 설탕, 식품, 의류, 가죽류, 목재·종이류, 2) 중기술(middle tech) 제조업: 광물성 제품, 철강 및 비철금속, 금속제품, 3) 중·고급(middle high tech)기술 제조업: 자동차 및 부품, 기타 운송장비

자료: EU-싱가포르 FTA: European Commission, 2013, The Economic Impact of the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p. 72-73.

21) "EU-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Unlikely to Affect Crude Oil Shipments", *Reuter*, February.13.2013.

22) ASEAN 회원국은 2009년 2월 제1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2015년까지 ASEAN 내 단일시장 건설을 골자로 하는 '후아힌 선언'을 채택한 바 있음.

- 싱가포르와의 FTA는 글로벌 규제경쟁에서 EU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EU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했다는 점은 EU가 글로벌 규제경쟁에서 ASEAN을 포섭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EU 측의 한국에 대한 비관세장벽 철폐요구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한EU FTA에서 EU산 자동차 및 부품의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간의 수렴 또는 쿼터제 도입을 결정했던 데 반해, EU·싱가포르 FTA에서 싱가포르는 EU의 UNECE 기준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별도의 자동차 생산이 없는 싱가포르의 경우 이 조치가 지나는 의미가 적을 수 있으나, 양자 FTA를 통해 ASEAN 회원국에 적용될 경우 이 부문에서 EU의 규제가 크게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한EU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EU·싱가포르 FTA에서도 전자파 적합성 및 전기안전 분야에서 공급자 적합자 선언(SDoC)을 도입하고, 이에 대한 예외 품목을 두되, 그 품목 수를 줄여나가도록 한 것도 동남아시아에 EU식 규제가 확산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향후 EU 측의 비관세장벽 철폐 및 규제수렴 요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의 선제적인 정비를 통해 산업계의 적응을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음.

부록

부표 1. EU의 FTA 추진현황 (2013년 12월 현재)

지역	국가	경과	협상추이
아시아	한국	▶ 2007년 5월 협상 시작 ▶ 2009년 10월 가서명, 2011년 10월 서명 ▶ 2011년 7월 발효	발효 3년 차
	싱가포르	▶ 2007년 5월 EU · ASEAN FTA 추진에 합의 ▶ 2009년 3월 이후 EU와 ASEAN 개별 회원국 간의 협상으로 변경 ▶ 2010년 3월 협상 시작, 2012년 12월 타결	2013년 9월 가서명(2013.09.20) 현재 투자 Chapter 협상 중
	인도	▶ 2007년 6월 협상 개시 ▶ 2013년 중 타결 목표(잔여 쟁점: 서비스, 정부조달)	11차 협상 완료
	말레이시아	▶ 2010년 10월 협상 시작	2012년 4월 7차 협상 완료
	베트남	▶ 2012년 6월 협상 개시	2014년 1월 6차 협상 예정
	태국	▶ 2013년 3월 협상 개시	2013년 12월 3차 협상 완료
	일본	▶ 2012년 11월 EU 이사회가 협상 승인 ▶ 2013년 4월 협상 개시	2014년 초 4차 협상 예정
북미	캐나다	▶ 2009년 5월 협상 개시 ▶ 2013년 10월 타결(2013.10.18)	가서명 및 공식서명 대기 중
	미국	▶ 2013년 7월 협상 개시 ▶ 2014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	2013년 12월 3차 협상 완료
중남미	콜롬비아/페루	▶ 2010년 2월 협상 완료, 2012년 6월 서명 ▶ 12월 유럽의회의 비준 완료(EU 측 공식절차 완료) ▶ 에콰도르, 볼리비아 포함(이상 안데스 공동체) 모색 중	2013년 3월(페루), 8월(콜롬비아) 잠정발효
	중앙아메리카	▶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6개국) ▶ 2010년 5월 협상 완료, 2012년 6월 서명 ▶ 12월 유럽의회의 비준 완료(EU 측 공식절차 완료)	곧 잠정발효 예정
	남미공동시장(MERCOSUR)	▶ 1999년 협상 시작 후 2004년 협상 중단 ▶ 2010년 5월 협상 재개	협상 재개 후 9차 협상 진행
북아프리카 · 중동	Euro-Med	▶ 1995~2002년 사이 제후협정 체결 ▶ 이집트, 요르단, 모로코, 튀니지와 개별 FTA 체결을 위한 협의 진행 중	2013년 3월 모로코와 FTA 협상 개시
	GCC	▶ 2008년 협상 중지	
동유럽	우크라이나	▶ 2011년 12월 제후협정 타결, 2012년 3월 가서명 ▶ 제후협정의 부속협정으로 FTA 추진, 2012년 7월 가서명	정식 서명 및 잠정발효 추진 중
	조지아	▶ 2013년 1월 7차 협상 완료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주도의 관세동맹 참여를 선언한 이후 일단 협상 중지
	아르메니아	▶ 2012년 2월 EU 이사회의 협상 승인 이후 4차 협상 진행	2013년 4월 5차 협상 예상
	몰도바	▶ 2012년 2월 협상 시작, 2013년 3월까지 6차 협상 완료	2013년 11월 가서명
	아제르바이잔	▶ 1999년 이후 동반협력협정(PCA) 체결 ▶ PCA를 제후협정으로 격상하고자 협의 진행 중	4차 협상 진행
	벨라루스	▶ 2009년 양자간 섬유협정 만기 이후 EU가 섬유쿼터를 부과 중	

주: 1) 남미공동시장: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2) Euro-Med(가입 연도): 이집트(2004), 이스라엘(2000), 요르단(2002), 레바논(2006), 모로코(2000), 알제리(2005), 튀니지(1998), 팔레스타인(1997 잠정발효), 시리아(중단).

3) 걸프협력회의(GCC):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자료: <http://ec.europa.eu/trade>로부터 저자 정리.

부표 2. EU의 주요 교역국 (2012년)

수입				수출				총 교역			
	국가	가치(백만유로)	(%)		국가	가치(백만유로)	(%)		국가	가치(백만유로)	(%)
	세계	1,790,837	100		세계	1,686,346	100		세계	3,477,183	100
1	중국	289,902	16.2	1	미국	292,193	17.3	1	미국	497,363	14.3
2	러시아	212,882	11.9	2	중국	143,833	8.5	2	중국	433,735	12.5
3	미국	205,170	11.5	3	스위스	133,288	7.9	3	러시아	335,898	9.7
4	스위스	104,564	5.8	4	러시아	123,016	7.3	4	스위스	237,852	6.8
5	노르웨이	100,152	5.6	5	터키	75,159	4.5	5	노르웨이	149,957	4.3
6	일본	63,838	3.6	6	일본	55,477	3.3	6	터키	123,004	3.5
7	터키	47,845	2.7	7	노르웨이	49,805	3	7	일본	119,315	3.4
8	한국	37,855	2.1	8	브라질	39,630	2.4	8	브라질	76,884	2.2
9	인도	37,328	2.1	9	인도	38,467	2.3	9	인도	75,795	2.2
10	브라질	37,254	2.1	10	한국	37,753	2.2	10	한국	75,608	2.2
18	싱가포르	21,502	1.2	15	싱가포르	30,340	1.8	14	싱가포르	51,842	1.5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Singapore.

부표 3. 싱가포르의 주요 교역국 (2012년)

수입				수출				총 교역			
	국가	가치(백만유로)	(%)		국가	가치(백만유로)	(%)		국가	가치(백만유로)	(%)
	세계	295,746	100		세계	320,831	100		세계	616,578	100
1	EU	37,203	12.6	1	말레이시아	39,252	12.2	1	말레이시아	70,711	11.5
2	말레이시아	31,459	10.6	2	홍콩	34,849	10.9	2	EU	66,365	10.8
3	중국	30,504	10.3	3	중국	34,302	10.7	3	중국	64,806	10.5
4	미국	30,213	10.2	4	인도네시아	33,726	10.5	4	인도네시아	49,443	8
5	한국	19,976	6.8	5	EU	29,163	9.1	5	미국	47,889	7.8
6	일본	18,399	6.2	6	미국	17,675	5.5	6	홍콩	37,125	6
7	인도네시아	15,717	5.3	7	일본	14,653	4.6	7	일본	33,052	5.4
8	사우디 아라비아	13,381	4.5	8	호주	13,341	4.2	8	한국	32,880	5.3
9	아랍에미 리트	12,195	4.1	9	한국	12,904	4	9	태국	20,065	3.3
10	인도	10,093	3.4	10	태국	12,159	3.8	10	인도	18,579	3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Union, Trade in goods with Singapore.

부표 4. EU의 대동아시아 수출

(2012년, 단위: 백만 유로)

국가 (동아시아 내 GDP 비중)	의료용품 (30)	향수류 (33)	가죽류 (42)	기계 및 부품 (84)	전기기기 및 부품 (85)	차량류 (87)	정밀 기기류 (90)	합계
중국 (45.4)	4,976 (27.4)	555 (15.3)	373 (8.9)	33,870 (45.4)	14,439 (36.6)	27,804 (59.1)	7,879 (37.5)	89,896 (43.2)
일본 (31.1)	7,314 (40.3)	679 (18.7)	1,191 (28.6)	6,345 (8.5)	3,241 (8.2)	8,008 (17.0)	5,193 (24.7)	31,971 (15.4)
한국 (7.2)	1,465 (8.1)	397 (10.9)	516 (12.4)	9,443 (12.7)	3,332 (8.4)	3,575 (7.6)	2,205 (10.5)	20,933 (10.1)
싱가포르 (1.5)	1,033 (5.7)	693 (19.1)	339 (8.1)	7,462 (10.0)	3,747 (9.5)	1,295 (2.8)	1,427 (6.8)	15,996 (7.7)
홍콩 (1.4)	485 (2.7)	614 (16.9)	1,536 (36.8)	3,686 (4.9)	5,492 (13.9)	1,321 (2.8)	1,573 (7.5)	14,707 (7.1)
대만 (2.8)	896 (4.9)	215 (5.9)	122 (2.9)	3,647 (4.9)	1,953 (5.0)	1,488 (3.2)	769 (3.7)	9,090 (4.4)
ASEAN 4개국 (9.6)	1,487 (8.2)	412 (11.4)	86 (2.1)	9,092 (12.2)	6,848 (17.4)	3,202 (6.8)	1,679 (8.0)	22,806 (11.0)
기타 ASEAN (1.0)	497 (2.7)	63 (1.7)	8 (0.2)	1,096 (1.5)	397 (1.0)	324 (0.7)	262 (1.2)	2,647 (1.3)
동아시아 (100)	18,153 (100)	3,628 (100)	4,171 (100)	74,641 (100)	39,449 (100)	47,017 (100)	20,987 (100)	208,046 (100)
EU 총 역외수출	106,287	20,568	8,688	306,205	143,774	183,619	74,549	843,690

주: 1) 'ASEAN 4개국' 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을 의미하며, '기타 ASEAN' 은 ASEAN 10개국 중 상술된 4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국가들을 의미함.

2) 동아시아는 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을 의미함.

3) 괄호 안은 EU의 대(對)동아시아 총 수출에서 해당 국가 및 국가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Global Insight, KIEP